주민등록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주민과-주민등록제도) 044-205-3143 행정안전부 (주민과-주민등록증, 주민등록전산정보) 044-205-3155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 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22. 1. 11.>
- **제2조(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22. 1. 11.>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이나 그 관할구역 내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 11.>
- **제3조(감독 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4. 1., 2022. 1. 11.>
- 제5조(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개정 2022. 1. 11.>
-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삭제<2014. 1. 21.>
-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 ③ 삭제<2016. 5. 29.>
-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9.>

[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 2.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 3.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 ② 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적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정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3. 8. 16.>
 -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야 한다.

-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통지 및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23. 8. 16.>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6. 5. 29.]

-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민 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 ② 변경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③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 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1. 11.>
 - ④ 변경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그결과(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변경위원회는 그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 8, 16.>
 - ⑤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2항에 따른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 8. 16.>
 -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2.

4., 2023, 8, 16.>

- 1. 행정안전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의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 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 개인정보 보호 업무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⑧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17. 7. 26., 2023. 8. 16.>
- ⑨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개정 2023. 8. 16.>
- ⑩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 ⑪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 8. 16.>
- ②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3. 8. 16.>
- ③ 변경위원회와 제12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6. 5. 29.]

-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 **제9조(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4. 1. 21.>
 - 1. 성명
 - 2. 성별
 - 3. 생년월일
 - 4. 세대주와의 관계
 -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 7. 주소
 -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 11. 삭제 < 2016. 5. 29.>
 -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2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 2. 본인
 -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②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는 재외국민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 1.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 2.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
 - 나.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
 - 다. 재외국민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재외국민 본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2020. 6. 9.>
-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6. 9.>
- **제13조(정정신고)**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訂正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의 방법 및 정정신고에 따른 정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6. 9.>
-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07. 5. 17.>
 -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7., 2019. 12. 3.>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신고대상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신고지(이하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라 한다)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12. 2., 2019. 12. 3.>
- ④제1항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5.17.>

[제목개정 2019. 12. 3.]

-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①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지(제14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를 말한다)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 5. 17,, 2009. 4. 1.>

[제목개정 2007. 5. 17.]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1.>
 -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 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1.>
 -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신고의 방법 등) ①이 법에 따른 신고는 구술이나 서면으로 한다.
 - ②신고에 관한 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②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 1. 21.>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 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외이주신고, 재외국민의 출국신고, 행정상 관리주소의 지정, 재외국민 구분 등록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

-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 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2, 2017. 7. 26, 2022. 1. 11, 2023. 3. 4.>
 - ②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2023. 3.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9. 12. 3.]

-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 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 (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9. 12. 3.>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 야 한다.<개정 2009. 4. 1., 2019. 12. 3.>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신설 2009. 4. 1., 2019. 12. 3.>
-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 2019. 12. 3.>
-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11.>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11.>
 [본조신설 2019. 12. 3.]
- 제21조(이의신청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전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 신청서 등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한다는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정하여 작성한다.
 -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 2. 세대주가 변경된 때
 -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시 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 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
 -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개정 2021. 7. 20.>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1.>
 -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2014. 1. 21,, 2016. 12. 2.>
 -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
 -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2014. 11. 19, 2017. 7. 26.>
 - 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21.>
 - 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 21.>
-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 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 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12. 26.]

-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2023. 12. 26.>
 -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 ③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으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 11., 2023. 12. 26.>
 - ④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 제26조(주민등록증등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26.]

-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2.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 ②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기준·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 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 세대주의 배우자
 -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개정 2022. 1. 11.>
- ④ 삭제 < 2016. 5. 29.>
- ⑤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②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6항의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제한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한다)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신설 2009. 4. 1., 2021. 7. 20., 2023. 12. 26.>
- ⑧ 열람 또는 등 · 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한대상자가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21, 7, 20,, 2023, 12, 26.>
- ⑨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6.>
- 1.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7항 및 제 8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09. 4. 1., 2021. 7. 20., 2023. 12. 26.>
- ①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21. 7. 20., 2023. 12. 26.>
-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 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 마.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4.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31조(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①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할 때에 주민등록표가 멸실, 도난, 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보유 또는 이용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 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
 -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 23., 2014. 11. 19., 2017. 7. 26.>
 -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삭제 <2009. 4. 1.>

- **제34조(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과 교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에 주민등록과 관련된 제반 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인증 방법(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6. 9.>
 -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 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 11, 2023. 12. 26.>
 -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언론사·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라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의2 삭제 <2020. 6. 9.>

제36조의3(비밀유지 등) 변경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36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5. 29.]

-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 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 2.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 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2. 1. 11.>
- 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 12조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5. 20.>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 · 제4호의2 · 제5호 · 제6호 · 제8호 · 제8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1, 2023. 12. 26.>
 - 1. 삭제 < 2022. 1. 11.>
 - 2. 삭제<2022. 1. 11.>
 - 3. 삭제 < 2022. 1. 11.>

[전문개정 2008. 12. 26.]

- 제40조(과태료) ①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5. 29.>
 -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5. 29., 2019. 12. 3.>
 -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 · 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1. 21., 2016. 5. 29., 2019. 12. 3.>
 -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1. 21., 2016. 5. 29.>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4. 1, 2016. 5. 29, 2022. 1. 11.>
 - ⑥ 삭제<2009. 4. 1.>
 - ⑦ 삭제<2009. 4. 1.>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